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이 용 희**

A Study on the Svalbard Treaty in the Arctic

Yong-Hee Lee

〈目 次〉

국문초록	IV.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분쟁의 쟁점 분석
Abstract	V. 결론
I. 서론	참고문헌
II. 스발바르조약의 체결배경 및 주요 내용	
III.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태도	

국문초록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는 1920년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노르웨이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군도와 주변해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국제법이 발전함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기존의 영해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되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12해리 영해, 200

* 이 논문은 극지연구소가 2012년 수행한 '극지연구 국제협력 역량강화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해사법학부 부교수,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해리 어업보호수역,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을 설정하였다. 노르웨이는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는 스발바르조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조약당사국은 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적 분쟁의 결과는 2012년 9월 동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과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양관할권 현황을 살펴본 후, 스발바르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동 분쟁의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archipelago of Svalbard which had been a *terra nullius* belonged to the Norwegian Territory by the 1920 Svalbard Treaty. However, the Norwegian sovereignty on the archipelago was not full and absolute. The treaty banned to use the archipelago for the military purpose and recognised the equal right to the other State parties of the treaty to carry on economic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mining in the archipelago and its territorial seas. Based on the developed international laws, Norway has a legal title to claim the full maritime jurisdictions around the archipelago. In fact, Norway expanded the outer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from 4 nm to 12 nm and established a 200 nm Fishery Protection Zone and a continental shelf, extending 200 nm around the archipelago.

Regarding the geographical scope, Norway argued that the treaty does not have any effects on the newly established maritime zo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some State parties of the treaty insist the opposite view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state practices. The results of the above international legal dispute would practically impact on the interes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acceded the treaty in September 2012.

This article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treaty and the State practices on

the archipelago, and analyzes the legal points of the dispute. Finally, it examines some ways to resolve the dispute including the making of a new international instrument and the juridical settlement procedures.

I. 서론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이하에서는 ‘스발바르조약’이라 함)』¹⁾은 1920년 2월 9일 서명되고 1925년 8월 14일 발효된 최초의 기속력있는 북극권조약이다.

스발바르군도는 북극 바렌츠해에 위치한 일련의 군도로서, 북위 74도에서 81도, 동경 10도에서 35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한다. 스발바르군도의 전체 육지면적은 62,400km²이며, 토착민이 존재하지 않는다.²⁾

스발바르군도의 주변수역은 풍부한 어업자원과 광물자원의 부존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얼음의 해빙으로 인하여 상업적 이용가능성이 대두된 북동항로의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³⁾

이와 같이 중요한 스발바르군도와 주변해역의 경제적, 전략적, 자원적 가치를 둘러싸고 최근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국제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쟁점의 발단은 스발바르조약 체결이후 발전된 국제해양법질서에 따라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는 확대된 해양관할권을 스발바르조약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조약 해석의 문제이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동 조약 체결이후 발전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200해리 어업보존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하고,

1)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은 오래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스발바르군도를 지칭하는 지명이었으며, 스발바르(Svalbard)는 오늘날 동 군도를 지칭하는 노르웨이의 지명이다. 현재는 노르웨이 외의 국가에서도 스발바르군도라는 지명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스발바르군도라고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The Disputed Maritime Zones around Svalbard", in Nordquist, Heidar, Norton Moore(eds.), *Change in the Arctic Environment and the Law of the Sea*(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cations, 2010), p.553.

3) Geir Hønneland, "Compliance in the fishery protection zone around Svalb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29(1998), p.340.

동 관할해역 내의 자원과 환경보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주장과 함께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조약이 스발바르군도의 육지부분과 4해리의 영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그 외의 관할해역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노르웨이의 주권적 권리가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를 제외한 스발바르조약 당사국들은 노르웨이가 영해 이외에 추가적인 해양관할권을 스발바르군도에 설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스발바르군도에 추가적인 해양관할권 설정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확장된 해양관할해역의 이용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 당사국 국민의 동등한 참여를 주장하거나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법상 논쟁은 북극해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9월 7일 동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당사국의 지위를 확보한 우리나라로서도, 스발바르조약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법적 논쟁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동 조약의 효력범위에 따라 자원이 풍부한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대한 자유로운 자원탐사 및 개발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뜨겁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극개발시대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하에서는 스발바르조약의 생성배경, 스발바르조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스발바르조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조약당사국들의 법적 논점을 분석한 후, 국제법적 해결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스발바르조약의 체결 배경 및 주요내용

1. 조약 체결 배경

스발바르군도는 1596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Willem Barents에 의해 발견되었다. 동 군도 주변에 서식하는 풍요로운 고래와 바다코끼리 자원은 17세기 초 영국과 네덜란드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 당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연합국(union)과 영국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네덜란드는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에 입각하여 수렵권을 주장

하였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스텔바르군도 주변수역의 자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스텔바르군도의 자원중 특히, 고래기름이 유럽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부터 동 자원과 양호한 기지 확보를 위한 영국과 네덜란드 양국간 경쟁은 치열해졌으며, 그 결과 양국기업의 이익을 저감시키게 되었다. 이에 양국의 고래기업들은 1623년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합의는 19세기 후반부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북서러시아의 사냥꾼들이 바다코끼리의 상아를 획득하기 위하여 바다코끼리를 포획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스텔바르군도는 19세기경 어느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무주지(*terra nullius*)가 되었다.⁴⁾ 따라서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스텔바르군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자원이 남획되어 북극 고래(bowhead whale)와 바다코끼리가 거의 멸종에 이르게 되었다.⁵⁾

한편, 유럽의 과학자들이 스텔바르군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대규모 탐험대가 스텔바르군도의 생물상, 지리 및 지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세기 후반부에는 스텔바르군도를 노르웨이 식민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과학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곧 철회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유럽국가의 석탄회사들이 스텔바르군도의 석탄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스텔바르군도가 노르웨이로 귀속되고 제1차 세계대전후 석탄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1920년대 후반에 석탄 개발이 종료되었다.⁶⁾

광업활동의 급속한 발달은 토지소유자의 결정과 토지소유자와 광업자간의 분쟁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사법절차와 같은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05년 노르웨이가 스웨덴과의 합병에서 독립한 후 노르웨이 정부는 북쪽지방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07년 스텔바르군도의 기존 법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스텔바르군도가 무주지라는 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제도를 제시하였다. 스텔바르군도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노르웨이, 스웨덴 및 러시아가 참가한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동 군도를 무주지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3국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동 군도를 관리한다는 초기제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스

4) Robin Chruchill, Geir Ulfstein, *op. cit.*, p.552.

5) Avango Dag (et. al), "Between markets and Geo-politics: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on Spitsbergen from 1600 to the present day", *Polar Record*, vol. 47(2011), pp.30-32.

6) *Ibid*

발바르군도의 행정권을 국제위원회에 부여하고, 동 위원회가 각 서명국으로부터 6년 단위로 총독(Governor)을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3국은 동 군도에 국제경찰단(International Police Corps)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서명국 국민은 동 군도의 자연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각각의 국내 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야생동식물과 자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한 스발바르 특별훈령(special directives)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추진된 스피츠베르겐회의(Spitsbergen Commission)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실패하였다.⁷⁾

제1차 세계대전 종전후 개최된 파리평화회의와 연계하여 1919년 스피츠베르겐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조약에 합의하였다. 동시에 이 조약은 다른 국가에게는 어업, 수렵 및 광업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주지로서의 권리를 보전해주고, 또한 연안으로부터 4해리까지의 스발바르 영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였다. 이 밖에도 이 조약은 스발바르군도를 해군기지로 사용하거나 요새화하거나 기타 전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동 군도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스발바르조약의 초기명칭은 ‘스발바르에 관한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및 스웨덴간 조약’으로서 2012까지 43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였다. 조약의 당사국중 대부분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비준하였지만, 아이슬란드, 체코 및 대한민국은 1994년, 2006년과 2012년에 각각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조약당사국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프리카국가가 2개국, 아시아국가가 6개국, 동유럽국가가 9개국, 서유럽 및 오세아니아국가가 22개국, 라틴 및 카리브해지역국가가 4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 등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8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일본, 중국 등 영구옵서버국도 모두 조약당사국이다. 또한 이들 43개 당사국중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1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거의 대부분 동일한 국제해양질서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Torbjørn Pederse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7(2006), p.342.

2. 조약의 주요 내용

스발바르조약은 전문과 10개 조문 및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미국,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의 국왕 또는 대통령이 공정한 제도를 수립하여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 지역의 개발 및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제1조는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full and absolute sovereignty)’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스발바르군도의 지리적 범위는 베어 섬과 그리니치 동경 10도와 35도 사이와 북위 74도와 81도 사이에 위치한 모든 섬, 특히 서 스피츠베르겐, 노스이스트 랜드, 바렌츠 섬, 옛지 섬, 위체 섬, 호프 섬 및 프린스 찰스 포어랜드와 크고 작은 모든 섬과 그에 부속된 암석을 포함한 스발바르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스발바르군도에 대하여 노르웨이가 향유하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이란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의 일반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대내적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포함하고 대외적으로는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조약 체결권 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⁸⁾ 다만, 이러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은 ‘이 조약에 따를 것을 조건(subject to the stipulations of the present Treaty)’으로 한다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동 규정이 의미하는 제한은 제2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어업과 사냥에 관한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조약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에게 조약이 적용되는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서 동등하게 어업 및 사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즉, 스발바르조약의 모든 당사국 국민이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하게(equally)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서 어업과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 동식물군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모든 당사국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도 산업활동에 대한 무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조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어떠한 이유나 목적으로도 조약이 적용되는 스발바르군도의 수역, 협만 및 항구(waters, fjords and ports)에 접근하거나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8)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13), 974쪽.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조약당사국의 국민에게 당해 지역의 법규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 평등에 기초하여(on a footing of absolute equality)' 어떠한 방해없이 '모든 해사적, 산업적, 광업적,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모든 조약당사국 국민에게 '동일한 평등의 조건하에서' 육상 및 영해에서 '모든 해사적, 산업적, 광업적, 상업적 기업 활동'이 허용되며, 어떠한 독점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상품의 수출, 수입 및 통관에 최혜국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국민, 선박 또는 상품도 같은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제4조는 통신에 관한 무차별적 원칙과 자유로운 무선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직접 또는 허가를 통하여 스발바르군도에 설치한 모든 무선시설은 모든 국가의 선박과 조약당사국 국민의 통신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전쟁상태에서의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무선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 선박, 항공기 등과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5조는 스발바르군도내에서 국제기상관측기지 설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협약을 통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발바르군도에서 수행될 과학조사의 시행조건에 대한 추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스발바르군도에서의 과학조사에 대한 추가협약은 체결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르웨이가 무차별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과학조사 활동에 무차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⁹⁾

제6조는 경과규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스발바르조약 서명시 이미 획득된 조약당사국 국민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서명 이전에 행하여진 토지의 점유 또는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스발바르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사유재산권의 처리에 관한 무차별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약당사국 국민의 재산 소유권 취득, 향유 및 행사방법에 관하여 완전한 평등에 기초하여 스발바르조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제공할 것을 노르웨이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가 조약당사국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공공목적일 것과 적절한 보상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설정하

9) Robin Chruchill, Geir Ulfstein, *op. cit.*, p.556.

고 있다.

제8조는 스발바르군도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업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급노동자들이 신체적, 도덕적, 지적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발바르군도에서의 활동으로부터 확보된 세금 또는 관세 등의 재원은 오직 스발바르군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세금 등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준만큼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에서의 광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1925년 8월 7일 ‘스발바르광업규칙’을 제정하였다.

제9조는 스발바르군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르웨이가 동 군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에 해군기지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군사적 목적의 요새를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10조는 러시아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러시아정부가 동 조약의 당사국이 될 때까지 러시아 국민과 기업에게 조약당사국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조약 내용을 살펴볼 때, 전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르웨이에 무주지로 간주되던 스발바르군도의 영토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무차별의 원칙하에 다른 조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스발바르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스발바르를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부여하였지만, 이는 오로지 스발바르조약상 규정된 제약의 틀 속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제약이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 대한 조약당사국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과 그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의 인정, 스발바르군도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세권의 제한 및 그 수익사용목적의 제한, 스발바르군도의 군사적 이용 제한 등이다. 이것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르웨이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10) D.H. Anderson,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40(2009), p.376.

3.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의 관리현황

스발바르조약 채택후 노르웨이는 동 조약의 발효시점에 맞추어 동 조약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1925년 7월 17일 ‘스발바르에 관한 법(Act relating to Svalbard)’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스발바르에서의 광업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1925년 8월 7일 ‘스발바르광업규칙(Mining Regulation for Spitzbergen)’을 제정하였다.

한편,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연안의 저조선과 만구 폐쇄선으로부터 4해리 영해를 주장하였으며,¹¹⁾ 이러한 태도는 1970년 9월 25일 칙령(Royale Decree of 25 September 1970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s of Parts of Svalbard)를 통하여 재확인되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동 칙령에 근거하여 스발바르군도에 대하여 83개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직선기선은 2001년 6월 1일 채택된 ‘스발바르 주변 노르웨이 영해 한계에 관한 규칙(Regulations of 1 June 2001 relating to the limit of the Norwegian territorial sea around Svalbard)’에 의하여 확대되어 대체되었다.¹²⁾

스발바르군도 영해의 폭이 기존 4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된 것은 2003년 7월 27일 제정된 ‘노르웨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Act No.57 relating to Norway’s territorial waters and contiguous zone)’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동 법은 2004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였다. 그러나 동 법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본토에 대해서만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있을 뿐 스발바르군도에 대해서는 접속수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¹³⁾

스발바르군도 영해 외측에 대한 노르웨이의 해양관할권 설정은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신설과 대륙붕 외측한계 연장이 논의된 시점 이후에 진행되었다.

우선, 노르웨이는 1977년 7월 3일 칙령(Regulation on the Fishery Protection Zone)에 따라 스발바르군도 주변에 200해리 어업보호수역(fishery protection zone)을 설정하였다. 그 이전에 노르웨이는 1976년 12월 17일 배타적 경제수역

11) *Ibid.*, pp.374-375.

12)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직선기선의 기점이 종전의 83개 기점에서 196개 기점으로 확대되었다.

13)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op. cit.*, p.560.

법을 제정하고 노르웨이 본토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으나,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는 200해리 어업보호수역을 선포한 것이다. 그 이유는 스발바르조약 당사국들이 스발바르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 대해서도 스발바르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대신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한 것이다.¹⁴⁾ 실질적 보호의 대상은 대구의 치어로서,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이 대구 치어의 중요한 서식지 역할을 하므로 동 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보호의 수단으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하는 규제수단의 대부분을 수용하여, 어구 및 어획어종의 크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이 동 수역의 설정권한을 부인하였으므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조약상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1977년 이전 10년 동안 동 수역에 조업실적이 있는 국가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입어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⁵⁾ 어업보호수역 설정 초기에는 보호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어선이나 자국어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¹⁶⁾ 그러나, 1993년부터 노르웨이는 자국 연안경비대로 하여금 불법어업선박에 대하여 경고사격, 어구 절단 등 강력한 집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이에 1994년 아이슬란드 선박에 대하여 동 조치가 적용되었다. 2004년에는 스페인 어선 두척을 나포하고 2005년에는 러시아 어선을 추격하는 등 어업조치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¹⁷⁾ 어업보호수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입장은 노르웨이 외무부가 발표한 ‘북극정책에 대한 백서(White Paper on Arctic Policy)’에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동 백서에서 노르웨이 외무부장관은 “어업보호수역에 대한 규제는 비록 스발바르조약이 동 수역에 적용된다고 하여도 동 조약과 충돌되지 않도록 제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¹⁸⁾ 결론적으로, 노르웨이도 비록 유엔

14) Rachel Tiller, "Institutionalizing the High North: Will the Harvest of redfeed be a critical juncture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Svalbard Fisheries Protection Zone?", *Ocean & Coastal Management*, vol.54(2011), p.375.

15) 어업보호수역에 대한 전통적 어업실적에 기초한 쿼터제는 1986년 도입되었으며, 1994년 개별국가별 쿼터제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Torbjørn Pedersen, *op. cit.*, p.346.

16) Geir Hønneland, *op. cit.*, p.342.

17) Torbjørn Pedersen,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in U.S. Policymak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Svalbard Dispu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2(2011), p.130.

18) Torbjørn Pederse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해양법협약에 따른 연안국의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스발바르조약 당사국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대신 어업자원 보호 목적의 어업보호수역이라는 변형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동 수역내 어업자원에 대한 자국민만을 위한 배타적인 자원 관리방식을 배제하고 스발바르조약의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역사적인 조업실적에 기초한 쿼타방식으로 주변국의 조업을 허용하는 태도를 현재까지 견지하고 있다.

한편, 대륙붕과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1963년 ‘노르웨이 연안 외측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에 관한 칙령(Royal Decree of 31 May 1963 relating to the Sovereignty of Norway over the Sea-bed and Subsoil outside the Norwegian Coast)’을 제정하였다. 이후 일련의 대륙붕 관련 국내법령을 제정하여 노르웨이 대륙붕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국내법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본토와 스발바르군도간의 대륙붕 한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1974년 정부백서(Government White Paper)를 통하여, 국제관습법과 1958년 대륙붕협약에 따라 연안국이 대륙붕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노르웨이드 본토로부터 대륙붕이 북극해까지 연장되며 스발바르군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스발바르군도는 자체적으로 대륙붕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¹⁹⁾ 스발바르군도의 대륙붕은 동쪽으로는 러시아의 프란츠 조세프란드섬(Franz Josef Land)과 노보야젼랴(Novoya Zemlya)섬의 대륙붕과 접해있으며, 서쪽은 그린란드와 접해있고 남쪽은 노르웨이 본토와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은 북극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스발바르군도와 노르웨이 본토간 대륙붕의 경계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서쪽의 경계에 관해서는 2006년 2월 20일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그린란드와 스발바르의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의 경계획정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on the one h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together with the Home Rule Government of Greenland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fishery zones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Svalbard)’²⁰⁾ 의 채택을 통하여 경계획정을 완료하였다.

Political Rivalries”, p.346.

19) Torbjørn Pedersen, “Denmark’s Policies Toward the Svalbard Ar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0(2010), p.322.

동쪽의 경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에 2010년 9월 15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조약(Treaty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²¹⁾을 체결하여 종국적으로 스발바르군도로부터 기인된 어업보호수역 및 대륙붕과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간의 경계를 획정하였다.²²⁾

북쪽의 경계에 관해서는 노르웨이가 2006년 11월 27일 노르웨이 본토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에 심사 요청하였다.²³⁾²⁴⁾ 이에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동 신청을 심사한 후 2009년 3월 27일 200해리 이원으로 연장되는 노르웨이의 대륙붕 한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로서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하는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노르웨이 본토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조약 당사국간의 조약 해석상 입장차이로 인하여 중대한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스발바르군도 주변 대륙붕 자원에 대한 탐사 또는 개발활동을 허가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있다.

20) 동 협정은 2006년 2월 20일 체결되어 동년 6월 2일 발효하였다.

21) 동 조약은 2010년 9월 15일 체결되어 2011년 7월 7일 발효하였다.

22) 비록 러시아와 노르웨이간 조약을 통하여 스발바르군도와 러시아간 어업보호수역 및 대륙붕경계획정이 이루어졌지만, 동 사실이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한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노르웨이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 조약 제6조에서도 이 조약이 발효한 시점에 이미 발효중인 양국이 당사국으로있는 다른 조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 조약이 해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그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Tore Henriksen, Geir Ulfstei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ctic: The Barents Sea Treaty",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2(2011), p.9 참조.

23) T. Pedersen, T. Henriksen, "Svalbard's Maritime Zones: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4(2009), p.151.

24) 노르웨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러시아, 덴마크, 스페인, 아이슬란드가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중 러시아와 스페인은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대륙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Ibid.*, pp.155-157 참조.

Ⅲ.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대한 조약당사국의 태도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영해 외측의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1970년대 이래 두 가지의 법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²⁵⁾ 노르웨이는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동 협약이 부여하는 권리에 따라 영해 외측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 수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스발바르조약상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 대한 모든 조약당사국 국민의 동등한 어업 및 광업에 대한 권리는 조약 체결후 발전된 국제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는 스발바르조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스발바르조약의 동등한 권리 조항을 추가적으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권에 대한 제약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조약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스발바르군도는 독자적인 대륙붕을 갖지 않으며 노르웨이 본토에서 연장된 대륙붕이 스발바르군도를 지나 뺏어 나갔다는 것이다. 즉, 노르웨이 본토로부터 연장된 대륙붕 위에 스발바르군도가 위치할 뿐이라는 것이다.²⁶⁾

캐나다와 핀란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캐나다의 지지 입장은 1995년 6월 30일 캐나다와 노르웨이간에 체결된 '어업보전 및 집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Conservation and Enforcement)' 전문에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의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연안국에게 부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스발바르조약은 동 수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통하여 표명되었다. 그러나, 동 협정은 발효되지 못하였으므로 캐나다가 여전히 노르웨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²⁷⁾ 핀란드의 경우에도 1976년 노르웨이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2005년 11월에 개최된 '바렌츠 유로 북극이사회 회의(Barents EURO-Arctic Council

25) 노르웨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1982년 12월 10일 서명하고 1996년 6월 24일 비준하였다.

26)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op. cit.*, pp.565-566.

27) *Ibid.*, p.564.

Meeting)’ 시 철회하였다.²⁸⁾

한편, 노르웨이의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약당사국은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지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10여개 국가들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권리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르웨이 주장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와 아이슬란드, 스페인,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을 반대하였다. 즉, 노르웨이가 스발바르조약에 규정된 영해 이외에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에 추가적인 해양관할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법적 논거는,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은 국제관습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스발바르조약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만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발바르조약상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오직 영해만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영해 이외에 어업보호수역이나 대륙붕을 조약당사국의 동의없이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태도는 노르웨이가 1977년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할 당시 바르샤바조약국들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³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2010년 9월 15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경제획정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적으로 스발바르군도로부터 기인된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러시아는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한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노르웨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¹⁾

아이슬란드도 노르웨이가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하고 불법어업선박에 대한 단속행위를 하는 것에 강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어업보호수역 쿼타 배정에서 제외된 아이슬란드는 이에 불만을 품고 노르웨이가 설정한 어업보호

28) T. Pedersen, T. Henriksen, "Svalbard's Maritime Zones: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p.145.

29) Torbjørn Pederse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p.345.

30) T. Pedersen, T. Henriksen, *op. cit.*, p.144.

31) Lotta Numminen,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Diana Wallis MEP, Stewart Arnold(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Oslo: Spitsbergen Publication, 2012), p.13.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어떠한 연안국의 관할권 외측에서 조업하는 것과 같이 다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2003년에 아이슬란드 수상 데이비드오드슨은 어업보호수역내 키티분쟁이 발생하였을 당시 노르웨이 연안경비대가 아이슬란드어선을 나포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³²⁾ 그러나 2006년에는 이러한 입장이 다소 변화하여,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노르웨이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관할해역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적 권리는 오직 스발바르조약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³³⁾

스페인인 노르웨이의 어업보호수역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어업보호수역에서 노르웨이가 타국선박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오직 기국에 의해서만 불법어업이 단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³⁴⁾ 한편,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에 대해서는 대륙붕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약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에 따른 대륙붕 자원에 대한 스페인의 권리에 대해 유보한다는 입장을 2007년 3월 2일 노르웨이에 전달한 구상서(Note Verbale)에 명시한 바 있다.

영국은 노르웨이의 주장에 대하여 초기단계에는 묵시적 지지 내지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다가 반대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초반 노르웨이의 대륙붕주장에 대해서는 1974년 10월 29일 노르웨이에 외교각서(aide memoire)를 보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1977년 어업보호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였다.³⁵⁾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노르웨이의 대륙붕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스발바르군도가 독자적인 대륙붕을 가지고 있으며, 스발바르조약이 동 대륙붕에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³⁶⁾ 더욱이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국가정책(the Norwegian High North Strategy)을 2006년 준비하는 것에 대응하여 2006년 3월 17일 노르웨이정부에 외교서한을 보내어 스발바르군도에 관한 견을

32) Torbjørn Pederse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p.347.

33) T. Pedersen, T. Henriksen, *op. cit.*, p.147.

34) *Ibid.*, pp.147-148.

35) Torbjørn Pedersen,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in U.S. Policymak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Svalbard Dispute", p.127.

36) United Kingdom, House of Lords Debates, vil. 477, 2 July 1986. *Ibid.*, p.129에서 재인용.

국제재판에 따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6년 미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대표를 런던으로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스발바르군도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그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³⁷⁾

덴마크는 북극해에 접해있는 유일한 유럽연합국가로서, 노르웨이의 주장에 대하여 초기에는 지지의 입장을 가지다가 유보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중국에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노르웨이에게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자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지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7년 어업보호수역 설정 시 스발바르군도 영해 외측의 해양관할권 확대에 대하여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1980년대 초에 어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며 노르웨이의 법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³⁸⁾ 이러한 덴마크의 태도는 2006년 2월 20일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그린란드와 스발바르의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의 경계획정 협정' 체결을 통하여 스발바르군도가 독자적인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을 보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노르웨이가 그 자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의 덴마크정책은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 수역에 대하여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을 보유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 수역에는 스발바르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⁹⁾

네덜란드는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할 당시 1977년 8월 3일 노르웨이에 외교각서를 송부하고,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 주변에 200해리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한 것은 승인하지만, 스발바르조약이 동 수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⁴⁰⁾

이상과 같은 노르웨이의 법적 해석에 대한 반대 입장국과는 달리 미국, 프랑스, 독일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 외측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스발바르조약 당사국으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노르웨이가 어업보호수역에 대하여 무차별원칙을 적용한

37) *Ibid.*, p.131.

38) Torbjørn Pedersen, "Denmark's Policies Toward the Svalbard Area", pp.320-321.

39) *Ibid.*, pp.328-329.

40) T. Pedersen, T. Henriksen, *op. cit.*, pp.145-146.

다는 약속을 기초로 노르웨이의 입장을 지지한 상태에서 자국 권리의 유보를 주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⁴¹⁾ 특히, 미국은 노르웨이의 대륙붕주장에 대하여 1974년 10월 29일 송부된 외교각서를 통하여 “미국은 스발바르에 속한 대륙붕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포함하여 스발바르조약에 따라 미국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체적으로 유보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⁴²⁾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스발바르군도가 위치한 바렌츠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한 러시아와의 안보적 고려와 동 지역에 부존된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자국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⁴³⁾

IV.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분쟁의 쟁점에 대한 해석

스발바르조약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 채택된 동 조약의 내용을 동 조약 채택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해양법질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좀 더 좁게 분쟁의 범위를 정의한다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약당사국간 분쟁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스발바르조약에 기속되는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현재의 국제해양법질서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노르웨이는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따라 부여된 연안국의 권리를 노르웨이가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스발바르조약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서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을 규율하는 특별한 조약이므로 동 조약상 영해이외의 해양관할권 설정 가능성에 대한 권한을 노르웨이에게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르웨이가 조약당사국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확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41) Torbjørn Pedersen,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in U.S. Policymak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Svalbard Dispute", p.127.

42) *Ibid.*, p.124.

43) *Ibid.*, p.131.

자신도 스발바르군도는 독자적인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는 비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에 따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으로 확장한 해양관할권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상의 제반 규정이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특히, 동 조약 제2조 및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 국민들의 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한 동등한 참여권이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범위가 스발바르조약의 엄격한 제한적 해석의 원칙(restrictive interpretation)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스발바르군도와 주변 영해에만 미치는가 아니면 진화론적 해석의 원칙(evolutionary approach)에 따라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에 대한 제약이 확장된 해양관할권에도 여전히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접근은 먼저, 스발바르조약과 현재 국제해양법질서인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11조 제2항에서 “이 협약은 이 협약과 양립가능한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그것이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스발바르조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가 양립가능한 것(compatibility)인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43개 스발바르조약당사국중 미국과 베네주엘라를 제외한 41개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며, 미국과 베네주엘라도 실질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스발바르조약당사국은 양 조약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발바르조약상 타조약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노르웨이가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으로서 영해의 폭을 4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하고, 스발바르군도 주변에 200해리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하고,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주변국과 대륙붕 경계획정을 하거나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를 설정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반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도 어업보호수역 설정 당시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010년 바렌츠해 해양경계획정시 노르웨이와 어업보호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을 하면서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

로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의 입장이 철회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양 조약당사국의 국가실행상 스발바르조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은 양립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적으로도 스발바르조약 규정이 노르웨이의 권리에 대한 타조약당사국의 제한가능성만을 열어두고 있고 노르웨이가 그 제한을 수용하였으며, 그것이 스발바르조약당사국 이외의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의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단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입각할 때 노르웨이를 비롯한 스발바르조약당사국은 스발바르조약의 조건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스발바르군도 주변의 해양질서를 존중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을 바탕으로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에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스발바르군도가 독자적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는 노르웨이 주장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입장이 도출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여부는 연안국의 재량적 권한에 맡겨져 있지만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연장 원칙으로서 연안국의 명시적 선언이나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에 의존하지 않고 육지의 자연연장이라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⁴⁴⁾ 또한 동 협약 제121조에서 섬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석이 아닌 한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발바르군도는 면적이나 과거 및 현재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이 아닌 제121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발바르군도는 노르웨이의 주장과 같이 노르웨이 본토로부터 유래된 대륙붕상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대륙붕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노르웨이의 국가실행에서도 노르웨이의 주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1977년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한

44) 유엔해양법협약 제77조 제3항.

점, 2006년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그린란드와 스발바르의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의 경계획정협정과 2010년 러시아와 노르웨이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조약시 스발바르군도를 경계획정의 기점으로 사용한 점, 2006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상 스발바르군도를 대륙붕 연장신청의 기점으로 사용한 점 등이 실질적 증거이다. 따라서, 노르웨이가 실질적으로는 스발바르군도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암석이 아닌 제1항의 섬에 준하여 해양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스발바르군도가 스스로의 대륙붕을 갖지 않는다는 노르웨이의 주장은 사실상 철회하거나 후속조치에 의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스발바르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조약의 해석을 조약 체결당시의 문언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약 체결후 발전된 국제법을 반영하여 동 발전된 국제법이 조약체결자의 의도와 배치되지 않는 한 그것을 반영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y)⁴⁵⁾ 제31조에서 제33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비록 이 협약이 조약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협약의 많은 규정이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⁶⁾ 따라서, 협약 제4조에서 협약 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 발효전에 채택된 조약에도 동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 협약의 비당사국인 경우에도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⁴⁷⁾ 특히, 조약의 해석에 관한 제31조와 제32조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므로 동 협약의 비당사국이거나 동 협약 발효전에 채택된 조약에도 적용된다는 판단은 2009년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제판결에서 명백히 확인된 바가 있다.⁴⁸⁾ 따라서, 스발바르조

4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69년 5월 22일 채택되었고 1980년 1월 27일 발효하였다. 2013년 2월 현재 113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을 1969년 11월 27일 서명하였으며, 1977년 4월 27일 비준하였다. <http://treaties.un.org> 2013.2.15일 방문.

46) Ian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7th edi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608.

47) D.H. Anderson, *op. cit.*, p.380.

48) *Judgement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Costa Rica v. Nicaragua)*, 13 July 2009, para. 47.

약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발효전에 채택되었으며, 노르웨이를 비롯한 몇몇 조약당사국이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스텔바르조약의 해석을 동 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제31조는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으로서, 제1항에서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문언적 해석원칙, 문맥적 해석원칙, 목적론적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⁴⁹⁾ 제2항에서는 문맥적 해석의 원칙상 문맥의 범위를 조약의 전문과 본문 및 부속서 이외에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당사국간의 합의와 조약 체결시 복수의 당사국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모든 타당사국이 동 문서를 조약과 관련된 문서로 수용한 것도 포함하도록 해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문맥을 해석함에 있어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 추후 합의,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 관행, 당사국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련규칙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4항에서는 당사국간에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였다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2조는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제31조에 따른 해석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해석 결과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약의 해석원칙과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문언적 해석원칙을 강조하며 제한적 해석의 원칙(principle of restrictive interpretation)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영토주권에 대한 어떠한 중대한 제약도 조약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약해석에 관한 국제법원칙으로서 확립된 바 있다. 영토주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그것의 자연적인 언어의 의미에 기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주권을 최소한도로 제약하는 해석이 채택되어야 한다. 스텔바르조약 제1조는 노르웨이에겐 스텔바르군도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주권

49) 김대순, 전거서, 213쪽.

을 부여하면서 노르웨이 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노르웨이는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따라 완전한 관할권을 갖는다.⁵⁰⁾

1999년 노르웨이 법무부가 작성한 백서에 명시된 위와 같은 노르웨이의 주장은 ‘의심이 있으면 주권의 제약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해석의 원칙⁵¹⁾에 따라 스발바르조약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스발바르조약상 노르웨이 주권이 제약되는 지리적 범위는 명문의 조약상 규정된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 국한될 뿐 영해 외측에 조약 발효후 새로이 다른 국제법에 따라 설정한 해양관할권에는 스발바르조약에 따라 조약당사국이 노르웨이 권리를 제한하여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르웨이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노르웨이의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서 규정된 해석의 원칙 중 문언적 해석에 치중하였을 뿐 문맥적 해석의 원칙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원칙은 배제하였다는 점이다.⁵²⁾

둘째,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제한적 해석의 원칙이 조약 해석에 관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 원칙은 1951년 Abu Dhabi 중재사건에 대한 판정에서 시작하여 1974년 Nuclear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WTO 분쟁해결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인용된 바가 있다.⁵³⁾ 그러나 1978년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2005년 Iron Rhine 중재재판소 판정, 2009년 Costa Rica와 Nicaragua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제한적 해석의 원칙을 배제하고 진화적 해석의 원칙 (evolutionary interpretation)을 적용하여 판결을 한 바 있다.⁵⁴⁾ 특히, 2009년 Costa Rica와 Nicaragua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조약 체결 당시의 의미로 조약의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조약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으며, 오

50) Norway, Ministry of Justice and Police, Report No. 9 to the Storting (1999-2000) - Svalbard, approved 29 Oct. 1999, sec. 4.1.1. D.H. Anderson, *op. cit.*, p.379에서 재인용.

51) 김대순, 전제서, 211-212쪽.

52) D.H. Anderson, *op. cit.*, p.380.

53)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op. cit.*, pp.576-577; 김대순, 전제서, 211쪽.

54) 이에 대해서는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op. cit.*, pp.581-582; 김대순, 전제서, 219-222쪽 참조.

히려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조약이 적용되는 시점의 국제법상 의미로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 조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공통된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⁵⁵⁾ 즉, 이러한 사실들은 제한적 해석의 원칙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약 해석에 관한 일관된 원칙으로 국제판결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최근의 국제재판의 결과 진화론적 해석의 원칙이 보다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조약 체결 후 조약당사국들의 국가관행상 제한적 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의 내용을 적용하였다기보다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조약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가 조약 체결 당시 영해의 폭을 4해리로 설정한 것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2003년에 12해리로 확장하였다. 시제법의 논리에 충실한다면 1920년대 당시 영해의 범위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4해리가 통상의 기준으로 인식되었고, 조약 체결당시 스발바르군도 주변 영해의 폭을 4해리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12해리로 확장하는 것은 시제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12해리 영해 확장에 대하여 다른 조약당사국들이 이에 반대하지 않았고, 4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된 영해에도 스발바르조약에 적용된다는 것은 진화적 조약 해석 결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영해 외측에 대륙붕이나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하는데 대부분의 조약당사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도 동 조약의 진화적 해석이 조약당사국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발바르조약당사국들이 조약 체결후 일치된 국가관행으로서 해양관할권 확장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의 진화적 해석에 동의한 것이라면 동 해양관할권의 이용에 관한 다른 조약 조문도 진화적 해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분석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의 주장은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진화적 해석에 따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을 기반으로 조약 체결후 발전된 국제법에 따라 해양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다면 동 주권에

55) *Judgement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Costa Rica v. Nicaragua), op. cit., para. 64.*

가해진 제약요소도 또한 확장된 해양관할권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노르웨이가 스발바르조약에서 부여된 동 군도에 대한 주권을 기반으로 해양관할권을 확장할 수 있을 뿐 그에 수반되는 제약은 확장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동 조약의 전문에 나타난 조약 체결시점의 당사국 의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주지인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을 노르웨이에 부여하는 대신 노르웨이로 하여금 스발바르군도와 그 영해에 대하여 타당사국 국민이 노르웨이 국민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어업 및 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 국제법상 영토에 대한 해양관할권은 영해만이 인정되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그 영해는 영토에 부속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제한된 주권에 근거하여 해양관할권이 확장된다면 그에 따라 기존 영해에 부과되었던 주권의 제약요소도 동시에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적용되는 것이 조약의 목적론적 해석에 적합할 것이며,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의 일반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⁵⁶⁾

또한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제법원칙은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여러 차례 반복되어 확인되어 온 바 있다.⁵⁷⁾ 즉, “육지 영토의 형세는 연안국의 해양권리를 결정함에 있어 시작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결의 내용과 같이⁵⁸⁾, 스발바르조약에 의거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의 제약은 그 영토에 근거하여 설정된 해양관할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

56)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op. cit.*, pp.571-572.

57)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Germany/Netherlands)*, Judgment, *I.C.J. Reports 1969*, p.51, para. 96;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Judgment, *I.C.J. Reports 1978*, p.36, para. 86;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97, para. 185;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Judgment, *I.C.J. Reports 2007*, para. 113.

58)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1*, p.97, para. 185.

59) Robin Churchill, Geir Ulfstein, *op. cit.*, p.572.

V. 결 론

스발바르조약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관한 대표적 쟁점 중 스발바르군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권 설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이나 국가관행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이자 이 분쟁의 핵심적 쟁점인 스발바르군도 영해에 대한 모든 스발바르조약당사국의 동등한 어업 및 광업권이 새로이 확장된 대륙붕과 어업보호수역 내지는 차후에 설정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노르웨이의 주장이나 이에 반대하는 타조약당사국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국제법원칙이나 일치된 국가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발바르조약 자체에는 동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헌장 제2조 제3항과 제33조에 따라 평화적으로 동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기관에 부탁하는 방법이다. 부탁의 대상은 조약법에 따라 스발바르조약의 명확한 지리적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국제관습법에 따라 스발바르조약이 오늘날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일견할 때 동 분쟁이 연안국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분쟁의 핵심은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의 특성상 동 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⁶⁰⁾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동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상태이며, 이밖에도 스발바르조약당사국중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도미니카,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등 22개국에 달한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

60) 유엔해양법협약 제288조.

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단수 또는 복수의 조약당사국이 노르웨이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스발바르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부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스발바르조약당사국 전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⁶¹⁾ 이 밖에도 중재재판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강제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르웨이와 다른 모든 조약당사국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특별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편,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사법적 해결방법 이외에도 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약을 개정하는 방법은 조약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방법과 조약의 의정서를 새로이 채택하는 방법, 조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예상될 수 있다. 스발바르조약 자체에는 개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모든 당사국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제의를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의에 관하여 취해질 조치에 관한 결정과 조약 개정을 위한 합의의 교섭 및 성립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된 조약은 새로운 조약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개정된 조약에 서명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서명하지 않은 원 조약 서명국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조약의 실질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원 조약 당사국의 서명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해양자원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결려있는 노르웨이가 순순히 확장된 해양관할권에 대한 스발바르조약의 적용을 수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한 막대한 자원 잠재력을 가진 스발바르군도 주변수역에 대한 이익을 타 조약당사국이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스발바르군도의 어업문제는 어업보호수역에 의해 현재 조정되고 있으며, 대륙붕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도 노르웨이의 제한정책에 따라 탐사조차 수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동 조약의 해석에 관한 본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 해양관할권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거나 스발바르군도 대륙붕에

6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59조.

대한 자원 탐사를 개시하는 경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국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분쟁해결의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스발바르조약은 원초 서명국과 추가 가입국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타당사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위의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스발바르조약의 쟁점에 관한 타 조약당사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적 논의에 대한 학술논문과 관련 국제판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국가에 비교할 때 동 조약문제 논의에 소외되었거나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중국, 일본 등 비북극, 비유럽국가간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스발바르조약의 해석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관련 국제회의 또는 학술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순,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2009.
-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013.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21세기북스, 2004.
- 리우 후이룽, “북극지역의 법률 현황과 문제점”, 「해양한국」, 2009. 8.
- 이영준, 정갑용, “북극의 법체제 현황 및 그 전망”, 「사회과학논총」, 제12권, 2004.
- Anderson, D.H.,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Maritime Areas around Svalb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40, 2009.
- Brownlie, Ian,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7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hurchill, Robin, Geir Ulfstein, “The Disputed Maritime Zones around Svalbard”, in Nordquist, Heidar, Moore, Norton(eds.), *Change in the Arctic Environment and the Law of the Sea*. Dordrecht: Martinus Nijhoff

- Publications, 2010.
- Dag, Avango(et. al), "Between markets and Geo-politics: natural resources exploitation on Spitsbergen from 1600 to the present day", *Polar Record*, vol. 47, 2011.
- Geir Hønneland, "Compliance in the fishery protection zone around Svalbard",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29, 1998.
- Henriksen, Tore, Geir Ulfstein,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ctic: The Barents Sea Treaty",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2, 2011.
- Numminen, Lotta, "A History and Functioning of the Spitsbergen Treaty", in Diana Wallis MEP, Stewart Arnold(eds.), *The Spitsbergen Treaty: Multilateral Governance in the Arctic*, Oslo: Spitsbergen Publication, 2012.
- Pedersen, Torbjør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7, 2006.
- _____, "Denmark's Policies Toward the Svalbard Ar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0, 2010.
- _____,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in U.S. Policymak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Svalbard Dispute",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42, 2011.
- Pedersen, Torbjørn, Henriksen, Tore, "Svalbard's Maritime Zones: The End of Legal Uncertain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24, 2009.
- Tiller, Rachel, "Institutionalizing the High North: Will the Harvest of redfeed be a critical juncture for the solidification of the Svalbard Fisheries Protection Zone?", *Ocean & Coastal Management*, vol.54, 2011.

[주제어] 스발바르군도, 스피츠베르겐, 스발바르조약, 북극, 해양관할권, 유엔해양법협약

[Key Words] Archipelago of Svalbard, Spitzbergen, Svalbard Treaty, Arctic, Maritime Jurisdiction, UNCLOS

[논문접수일] 2013년 06월 17일

[논문심사일] 2013년 07월 03일

[논문채택일] 2013년 07월 19일